

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

2023.03.07. 전면 개정

제1조(목적)

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36조의 위임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 및 중앙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, 본회 회장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본회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신뢰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 원칙)

- ① 본 세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.
- ② 정기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 예산안은 6월 대표자회의(정기회)와 12월 대표자회의(정기회)에서 공개한다.

제3조(정기 지원금)

- ① 분과위원회와 중앙동아리의 정동아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다.
- ② 지원금의 기본 액수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다.
- ③ 각 분과위원회 및 중앙동아리의 정기 지원금은 반기별로 전체 지원금 총액 규모의 3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- ④ 분과위원회가 사고 단위인 경우 정기 지원금의 5분의 1을 삭감한다.
- ⑤ 직전 반기에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삭감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가 기간의 과반이 사고 단위였을 경우, 정기 지원금의 5분의 1을 추가 삭감한다.
- ⑥ 중앙동아리 정기 지원금 가감의 경우 본회 회칙 제124조 및 제125조를 따른다.
- ⑦ 지급 시기는 6월 대표자회의(정기회)와 12월 대표자회의(정기회) 소집일 기준으로 한 달 내외로 한다. 단, 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리 할 수 있다.

제4조(특별 지원금)

학내 동아리 및 분과위원회가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학교 밖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지원한다. 단, 수익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.